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 신청서

※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중견기업 해당 여부 ^①				☐ 해당 ☐ 비해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여부 ^②				☐ 해당 ☐ 비해당		
2.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직전년도 연평균 기준 ^③ (2021년도 고용보험 신규 성립 사업장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등				장려금 지급 신청기간 ※ 최초 채용월부터 월말 기준 피보험자 수 기입								
(명)		구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해당 월말 전체 피보험자수										
		신청인원 (지원대상 청년수)										
3. 신청 내용												
청년 정규직 채용(전환) 현황 () 명												
연번	회사 구분 ^④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용(전환)일 (년 월 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여부 ^⑤		청년디지탈, 청년일경험 참여 여부				
				월별 임금 총액(원)(세전 기준)								
1	☐ 1회차 ☐ 2회차			년	월	일	☐ 해당 ☐ 비해당	☐ 해당 ☐ 비해당	☐ 해당 ☐ 비해당	☐ 해당 ☐ 비해당	☐ 해당 ☐ 비해당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원	원	원	원	원	원	원		
2	☐ 1회차 ☐ 2회차			년	월	일	☐ 해당 ☐ 비해당	☐ 해당 ☐ 비해당	☐ 해당 ☐ 비해당	☐ 해당 ☐ 비해당	☐ 해당 ☐ 비해당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원	원	원	원	원	원	원		
3	☐ 1회차 ☐ 2회차			년	월	일	☐ 해당 ☐ 비해당	☐ 해당 ☐ 비해당	☐ 해당 ☐ 비해당	☐ 해당 ☐ 비해당	☐ 해당 ☐ 비해당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장려금 신청인원 () 명, 신청금액 () 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상기와 같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월별임금대장 2. 임금지급증빙서류 3. 근로계약서 4. 통장사본 5. 사업주 확인서 등 입증서류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소장	결재 연월일						
						. .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 신청서 작성 요령>

※ 동 작성 요령에 없는 사항은 시행지침 해당 파트에서 확인

- ① 중견기업 해당 여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이면 해당란에 체크
- ②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에 해당하면 체크
- ③ 직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2020.12월에 장려금 신청 대상인 청년을 최초로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청년과 이후 채용하는 청년 모두 2019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가 기준이며, 2021년에 최초로 청년을 채용하여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인 2020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가 기준임

(예시)

- 2019.12월말 이전 고용보험이 이미 성립된 사업장에서 2020.12월 최초로 청년을 채용하고, 2021.1월에 1명, 2021.2월에 1명을 추가 채용하였을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는 3명의 청년 모두 2019년 연 평균 피보험자 수임
- 2020.1월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된 사업장에서 2021.1월 최초로 청년을 채용하고, 2021.2월에 1명, 2021.3월에 1명을 추가 채용하였을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는 3명의 청년 모두 2020.1월부터 2020.12월까지의 매 월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임
- 2020.5월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된 사업장에서 2020.12월 최초로 청년을 채용하고, 2021.1월에 1명, 2021.2월에 1명을 추가 채용하였을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는 3명의 청년 모두 2020.5월부터 2020.11월까지의 매 월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임
- 2020.11월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된 사업장에서 2020.12월 최초로 청년을 채용하고, 2021.1월에 1명, 2021.2월에 1명을 추가 채용하였을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는 3명의 청년 모두 2020.11월 말 피보험자 수임
- 2020.12월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된 사업장에서 2021.1월 최초로 청년을 채용하고, 2021.2월에 1명, 2021.3월에 1명을 추가 채용하였을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는 3명의 청년 모두 2020.12월 말 피보험자 수를 기입
- 2021년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된 사업장의 기준 피보험자 수는 고용보험 관계 성립월 말 피보험자 수임

④ 회차 구분

: **(1회차)** 채용일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 **(2회차)** 1회차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인턴형) 프로그램 참여 여부

– 일경험(인턴형) 프로그램 참여 중인지 여부를 해당 란에 체크

※ 일경험(인턴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정규직 전환일을 채용일로 간주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주 확인서

-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 위 장려금 지원을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분(예, 아니오)에 진하게 체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대상자 성명	
1. 채용일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인턴형) 참여자만 전환일 기재	(채용일) 20 년 월 일 (전환일) 20 년 월 일

□ 사업장 요건	예	아니오
----------	---	-----

1. 청년 최초 신규 채용월의 전년도 연평균 피보험자 수((21년도 고용보험 신규 성립 사업장의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2. 우선지원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됩니다.		
3. 임금체불 중 또는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이 아닙니다.		
4. 신청대상 근로자의 채용 전 1년 이내 관련 사업주가 아닙니다. ※ 지침 p10 2-8 참조		
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이 아닙니다. ※ 지침 p10 2-5 참조		
6. 최근 1년간 임금체불로 3회 이상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기업(사업주)이 아닙니다. ※ 지침 p10 2-4 참조		
7.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근로자 채용 등 조건으로 금전적 지원(인건비)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지원 가능)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 제40조의2 참조		

□ 근로자 요건(반드시 개인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신청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2. 신청대상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입니다.		
3. 신청대상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4. 신청대상 근로자는 채용당시 재학생(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이 아닙니다. ※ 채용시점에 최종학교 졸업예정자인 경우 졸업(수료)예정일: (년 월 일) * 확인자료 첨부 제출		
5.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와 4촌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신청대상 근로자는 채용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자영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7. 신청 대상 근로자는 채용일 기준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자가 아닙니다.		
8. 신청대상 근로자는 일학습병행제 참여자로 등록된 근로자가 아닙니다.		
9. 신청대상 근로자는 외국인인 아닙니다.		
10. 신청대상 근로자는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11. 신청대상 근로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인턴형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기타

1. 사업주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신청 시 동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2. 지원금 지급 신청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사실과 다를 없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 징수,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제한,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

확 인 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